학생상벌규정 5-2-2

규정번호 5-2-2
제정일자 1986.3.1
최근개정 2024.1.24
개정차수 13차 개정
관리부서 학생복지팀

<전면개정 2024.01.24.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학생 포상 및 징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) ① 학생포상의 종류는 설립자상·이사장상·총장상으로 구분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1. 대학과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생
2.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
3.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학생
4.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

제3조(징계) ① 학생징계의 종류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으로 구분한다.

② 학칙 제44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상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1. 우리대학 설립정신에 위배되며 학교명예를 훼손한 학생
2. 집회 허가 없이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동조한 학생
3.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
4. 총장의 경고·금지사항을 위반한 학생
5. 기타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

③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 재심의·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·교목실장·기획실장·교무처장·산학협력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)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준용) ① 우리대학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지침을 따른다.
② 기타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학칙) <2009.2.26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69> <생략>
<70>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②, 제3조②, 제5조, 제8조②, 제12조5호, 제13조, 제13조⑥, 제15조①·② 중 “학장”을 각각 “총장”으로 한다.
<71> - <102> <생략>

부 칙(학칙) <2010.3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38> <생략>
<39>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③항의 “학생과장”을 각각 “학생팀장”으로 하고, 제9조 ①항의 “학적과”를 각각 “학적팀”으로 한다.
<40> - <49> <생략>

부 칙직제규정) <2013.7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1> <생략>
<22> 학생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②항의 “학생처장, 산학협력처장”을 “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”으로 하고, 제3조 ③항, 7조, 8조, 9조, 13조의 “학생처장, 학생팀장”을 “학생지원처장, 학생복지팀장”으로 한다. <23> - <30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(제12조제3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전면개정)